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21호

2027년도 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

성장단계별(초기·도약기)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갖춘 **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의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모집공고는 창업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27년 예산안 확정 결과에 따라 선정 규모·유형·지원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1 공통사항

1 모집 개요

□ **사업명 : 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 **사업목적**

○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의 시장안착을 위해 사업화자금, 실증 및 판로개척, 초기 투자유치 등을 지원

○ **(창업도약패키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사업화자금,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

□ **모집규모(안) : 총 35개 기관**(초기 21, 도약 14)

(단위 : 개, 개사, 억원)

구분	유형		주관 기관	지원기업	기관 당 기업 수(안)	기업 당 지원한도	모집 단위
초기	일반형	일반	16	320	20	최대 1억원	5개 권역
		여성	1	40	40	최대 1억원	전국
		사회연대경제	1	40	40		
	마일스톤형		3	120	40	최대 1.5억원	전국
	소계		**21**	**520**	**25(평균)**		
도약	일반형 (기본형 9, 전문형* 3)		12	305	25	최대 2억원	5개 권역
	스케일업형		2	35	18	최대 3.5억원	전국
	소계		**14**	**340**	**24(평균)**		
합계			**35**	**860**	-		

* 단, 창업도약패키지 전문형은 전국 단위

□ **지원내용 :** 창업기업 지원* 및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

* 모집·선정 지원, 협약·사업비 관리,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 **협약(지원) 기간 :** 4년(기본2년 + 연장 최대 2년)

* 기본협약 2년 차에 별도 평가를 통해 협약 연장(1년 또는 2년) 여부 결정

□ **유형별 중복 신청 · 수행**

○ 초기창업패키지와 창업도약패키지는 **모두 신청 가능**하며, 사업별 선정 시 **모두 수행 가능**

- **(초기) 일반형**(일반, 여성, 사회연대경제 中 택1)과 **마일스톤형**은 **모두 신청 가능**하나, **1개** 유형만 수행 가능

- **(도약) 일반형, 스케일업형** 중 **1개** 유형만 수행 가능

2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 신청 자격

○ 창업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대학·연구기관, 민간기관(협·단체, 투자 전문기관 포함) 등 **모든 유형의 기관**

- **(타 기관 협력)** 창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은 대학, 민간 등 **타 기관과 협력**(컨소시엄)**하여 사업신청 가능**

* '신청기관 - 협력기관' 구조로 사업참여는 가능하나, 협약은 전문기관(창업진흥원)과 신청기관(1개 기관) 간 진행하며 총 사업비 관리·집행 모두 신청기관에서 일괄 수행

- **(민간기관)** 기업신용등급* **B이상**** 신청 가능

* 모집공고 게시일로부터 마감일 이내 평가 및 발급받은 확인서만 인정

** 신용등급 B 이상 기준 : 기업의 신용등급이 기업신용평가등급(BB-), 회사채(BB-), 기업어음(B0) 이상인 경우

- **(회계 처리) 지정은행**(신한은행)에서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고,**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한 회계처리 가능 기관

□ 신청 제외대상

○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 다만, 신청·접수 마감일('26.11.2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④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⑤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진흥원 사업비 집행 관리 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사업비 집행)가 불가능한 경우
⑥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⑦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협약 해약' 판정을 받은 경우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26.10.30.(금) ~ '26.11.20.(금) 16:00까지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로그인 → 사업신청관리 접속 → 온라인 작성 → 제출

* 회원가입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개인 명의 진행
** 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접수 필요

< 유의 사항 >

① 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② 신청·접수 시스템 내 기관정보 등록을 위해 **대표자 회원가입 선행 필수**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④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접수 마감시각(16:00 이후) 이후에는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의 수정·삭제 불가**

○ **(제출서류)** ①제출 공문, ②사업계획서, ③·④증빙서류 각 1부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주요내용	비고
필수	① 제출 공문	기관 공문	기관장 직인본 (HWPX 또는 PDF)
	② 사업계획서	-	
	③ (증빙서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전담조직 전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해당시	④ (증빙서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민간기관

4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2단계 평가(서류평가 → 발표평가)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유형・권역별)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

* 민간기관의 경우, "기업신용등급 B 등급 미만"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신청기관의 대표자 또는 조직의 장이 직접 발표하고,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선정 후보기관을 결정

- **(평가시간)** 3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표자)** 총괄책임자(대표자) 또는 전담조직의 장 이상(단장, 센터장 등)

< 선정평가 절차(안) >

서류평가	발표평가	사업운영위원회	결과 통보
~ '26.11월	~ '26.12월	~ '26.12월	~ '27.1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기관별 발표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 이의신청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6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계별(서류평가·발표평가) 평가점수 60점 미만 득점 기관은 탈락 처리

□ **최종 선정**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시행하여 선정 후보기관을 결정하고,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 선정

*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주관기관 선정 유형·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신청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5 유의 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주관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선정 완료 이후 평가 중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건 미충족 사례가 발생될 경우, 협약취소 등 조치

○ 선정된 기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 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신청기관의 장 (협력기관의 장 또는 전담조직의 장 명의로 신청 불가)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 및 접수는 신청 기간('26.11.20(금), 16:00) 내 필히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 이후 추가 제출은 불가**함

* 제출서류 등에 누락·착오가 있더라도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보완·교체 등 일체 불가

○ 사업 운영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주관기관 신청 자격에 위반되는 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취소 등 조치

○ 신청기관은 타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협약은 전문기관(창업진흥원)과 신청기관 간 진행

* 모든 사업비는 신청기관에서 일괄 관리·집행(협력기관에 사업비 재교부 불가)

** 협력기관과 참여기관은 단독으로 주관기관 기능을 수행하거나 "OO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된 기관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를 필수로 개설하고,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및 향후 동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6 모집공고 설명회

□ **설명회** :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각 1회 개최

구분	비수도권	수도권
일시	11.4.(수) 14:00~16:00	11.6.(금) 14:00~16:00
장소	세종 창업진흥원 1층 컨퍼런스홀	서울 팁스타운S2 (명우빌딩) 지하 1층 유니온스퀘어

7 문의처

□ **신청 · 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시스템운영팀)

□ **절차 · 공고 문의**

사업명	담당 기관 (부서)	문의처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진흥원 (초기도약실)	☎ 044-410-1831, 1834, 1862, 1864
창업도약패키지	창업진흥원 (초기도약실)	☎ 044-410-1860, 1865, 1866, 1867, 1868

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별
신규 주관기관 모집 세부계획

2 초기창업패키지

□ 사업 목적

○ 유망 창업 아이템·기술을 보유한 업력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진입 및 성장 도모

□ 선정 규모 : 총 21개 기관 내외

<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유형별 선정규모(안) >

모집 유형		선정규모	지원예산	창업기업	비 고
일반형	일반	16개 기관	3.3억원 내외	320개사 내외 (기관당 20개 내외)	초기창업기업 지원기관
	여성특화	1개 기관	5.4억원 내외	40개사 내외	여성 초기창업기업 지원기관
	사회연대경제	1개 기관	5.4억원 내외	40개사 내외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가치실현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초기창업기업 지원기관
마일스톤형		3개 기관	5.4억원 내외	120개사 내외 (기관당 40개 내외)	성장(투자) 가능성이 높은 유망 초기창업기업 후속지원 기관

* 선정평가 결과 및 권역(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 예정

**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권역별 선정 규모보다 적게 선정할 수 있음

*** 일반형 신청기관의 경우 일반형 내 유형(일반, 여성특화, 사회연대경제) 中 1개만 신청 가능

❶ (일반형_일반) 16개 기관 내외

< (일반형_일반) 주관기관 선정규모(안) >

구분	수도권 (강원 포함)	동남권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 (전북, 제주 포함)	합계
주관기관수(개)	5	3	2	3	3	16

* 권역구분 : 5극 광역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3특은 해당 지역에 포함하도록 운영

❷ (일반형_여성특화*) 1개 기관 내외

* 여성 초기창업기업 지원기관

❸ (일반형_사회연대경제*) 1개 기관 내외

*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초기창업기업 지원기관

❹ (마일스톤형*) 3개 기관 내외

* 성장(투자) 가능성이 높은 유망 초기창업기업 후속 지원기관

※ "일반형(일반, 여성, 사회연대경제 중 택 1)"과 "마일스톤형" 모두 신청 가능하나, 1개 유형만 수행 가능하며, 양 유형 모두 선정되었을 경우 "마일스톤형" 우선 선정

□ 운영비 지원

○ 전담조직(팀)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 주관기관 모집유형별 기관 당 예산(안) >

구분	일반형			마일스톤형
	일반	여성특화	사회연대경제	
예산(안)	3.3억원 내외	5.4억원 내외	5.4억원 내외	5.4억원 내외

* "일반형_일반"은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1억원, 이 외 유형은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2억원 포함

** 창업기업 신청수요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요건

○ **(전담조직 및 인력) 전담조직의 장 및 총괄책임자는 각 1명씩 필수** 구성하며, **전담인력 2인 이상**, 겸직인력은 자율 구성

- **전담조직의 장** : 주관기관의 임명을 받은 자(또는 주관기관의 장)로서 창업(또는 창업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하고 사업 기획·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

- **전담인력** : 창업지원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 **2인 이상 필수 구성**

* 전담인력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업무 참여율**이 **100%인 수행인력**을 의미

< 주관기관 인력구성 요건(안) >

구분	자격 기준	인원 수	요건
총괄책임자 (대표자)	-	1인	필수
전담조직의 장	전담 또는 겸직으로 필수 구성	1인	필수
전담인력	본 사업의 참여율 100%를 의미하며, 초기 창업기업 지원·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	2인 이상	필수
겸직인력	-	-	자율

* 전담인력 "확보 예정(확보·설치 등)"으로 기재한 사항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응자금 및 투자재원)** 신청기관의 대응자금(자기부담사업비) 및 투자재원은 자율적으로 조성

※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재원(대응자금 및 투자재원)' 조성은 **'27년 계획한 규모**에 따라 사업기간(2년+2년) 동안 **동일하게 조성**되어야 하며, **미이행 시 제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주관기관 의무 및 역할

1 창업기업 발굴·지원

○ **(창업기업 발굴·선정)** 우수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모집, 창업기업 선정평가 운영 **(필수)**

* 다수의 창업기업 선정을 위해 PMS 등록 전문가를 무작위 위촉하여 선정 평가를 실시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 >

창업기업 모집	요건검토·서류평가	발표평가	선정·통보
중기부/주관·전문기관	주관·전문기관	주관기관	주관·전문기관

* 평가 절차 및 세부 방식은 추후 별도 안내

○ **(사업화 지원·관리)** 창업기업의 사업추진·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승인·정산 및 창업기업 지원성과 조사 **(필수)**

2 창업기업의 진도 및 성과관리

○ **(상담관리)** 창업기업의 사업화 목표(KPI) 및 마일스톤 관리 등을 위한 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필수)**

○ **(진도관리)**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기준 및 절차 등 지정 회계법인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비·사업운영 진도 관리 **(필수)**

○ **(성과관리)** 창업기업의 성과목표관리 등 원활한 창업활동을 지원하며, 사업종료 후 5년간 창업성과 추적 관리 **(필수)**

3 창업 프로그램 운영

○ **(특화 프로그램)** 신청기관의 특장점을 활용하여 초기기업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특화 프로그램(개방형*) 1개를 필수 운영 **(필수)**

* 특화 프로그램은 주관기관에 매칭된 창업기업을 포함하여 당해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 신청기관은 3개 분야(①시장진입(판로), ②실증(PoC), ③투자유치) 중 희망 분야를 선택하여 프로그램(1개) 운영

< 특화 프로그램 3개 분야 >

구분	①시장진입(판로)	②실증(PoC)	③투자유치
창업 프로그램	판로개척, 마케팅 연계	기술사업화, 실증 연계	IR, VC, AC 연계, M&A
프로그램 규모	*** 수도권은 분야별 1개 이상, 비수도권은 분야별 2개 이상 선정***		

* 프로그램 규모는 주관기관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율 프로그램)** 초기기업의 시장검증, 비즈니스모델 정립, 투자유치 등 창업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

< 창업 프로그램 운영(안) >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지원내용</th></tr>
<tr><td rowspan="2">필수
(1개)</td><td>특화
프로그램</td><td>• 아래의 3개 분야 중 1개 분야 (1개 특화 프로그램) 운영
<table>
<tr><th>시장진입(판로)</th><th>실증(PoC)</th><th>투자유치</th></tr>
<tr><td>판로개척, 마케팅 연계 등</td><td>기술사업화, 실증 연계 등</td><td>IR, VC·AC 연계, M&A 등</td></tr>
</table></td></tr>
<tr><td rowspan="4">자율
(예시)</td><td>판로지원</td><td>• 판로개척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예시 : 대기업매칭 OI, 구매상담회, 유통입점 상담회 등</td></tr>
<tr><td>투자유치
지원</td><td>• 투자역량 강화 및 투자유치 지원
* 예시 : 투자상담회, IR 컨설팅 등</td></tr>
<tr><td>자금확보</td><td>• 창업기업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예시 : 투자상담회 및 IR, 재무컨설팅 등</td></tr>
<tr><td>정보교류</td><td>• 창업기업 경영 및 기술 역량 제고, 지원프로그램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예시 : 기업진단 및 경영컨설팅, 기술표준 포럼, 정책 세미나, 기타 창업기업 네트워크 행사 등</td></tr>
</table>

* 신청기관이 운영하고자 하는 창업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 KPI를 제시하고 성과 창출 전략을 수립.운영

□ 평가지표(안)

서류평가	배점	발표평가	배점
1. 기관 현황 및 인프라 (인프라, 네트워크, 실적.성과 등)	20	1.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목표, 핵심역량 등)	20
2. 추진체계 및 선정관리 계획 (비전 및 전략,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	50	2. 사업 운영관리 (창업기업 성장지원, 후속관리, 사업비 등)	30
3. 프로그램 운영계획 (특화 및 자율 프로그램 등)	30	3. 프로그램 운영계획 (특화 프로그램, 자율 프로그램, 인프라 연계 등)	50
합 계	**100**	**합 계**	**100**

* 상기 평가지표(안)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선정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시행하여 선정 후보기관을 결정하고,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 선정

*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주관기관 선정 규모보다 적게 선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신청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주관기관 사업비 집행기준

< 주관기관 사업비 비목 >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제28조)

비목	비목 정의
	증빙서류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창업기업 등 지원을 위한 멘토링, 자문, 교육, 기술지원, IR, 협력기관 연계 프로그램, 규제애로 해소 지원, 지역협의회비 등
	내부결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프로그램 운영 사진, 서명록 등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인건비	지원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전담인력 인건비 및 겸직인력 수당
	• 최초 신청시 : 4대사회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매달 신청시(인건비) : 내부결재, 입금확인증(송금증), 급여대장 • 매달 신청시(수당) : 내부결재, 입금확인증(송금증), 업무내역서, 시간외 및 휴일근무 기록서, 품의서 등 • 협약 종료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대사회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수용비	창업기업등 모집·선정을 위한 평가비용, 수당 및 소모품비, 홍보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 평가비용 및 수당 : 내부결재, 위촉동의서, 서명록 등 증빙서류 • 소모품비 : 내부결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신용카드 영수증에 내역이 있을 시 생략),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등 • 홍보비 : 내부결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제작물 등 • 기타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등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여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참여인력 여비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회의비 (업무추진비) * 정부지원사업비 + 대응자금2% 이하 구성	본 사업 관련 회의 및 간담회비
	내부결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회의록(30만원 이상 집행시), 서명록 등
기 타	• 비교견적서 : 2천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제출 필요

3 창업도약패키지

□ 사업 목적

○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 및 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 선정 규모 : 총 14개 내외(일반형 12, 스케일업형 2)

< 창업도약패키지 주관기관 모집분야별 선정(안) >

모집분야	선정규모	지원 창업기업 수	비고
일반형	12개	25개사 내외	'5극(3특 포함)' 기준으로 권역별 선정
스케일업형	2개	17개사 내외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각 1개 선정

< 주관기관 운영체계(안) >



❶ (일반형) 12개 내외

< "일반형" 주관기관 권역별 선정규모(안) >

구분	수도권 (강원 포함)	동남권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 (전북, 제주 포함)	합계
주관기관수(개)	4	2	2	2	2	12

* 권역 기준 : 전담조직 사무실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 선택(실제 전담조직 근무지가 상이한 경우 선정취소 등 제재 할 수 있음)

- **기본형(9개)** : 기업관리, 상담, 진도관리 등 기본적 보육프로그램 운영
- **전문형(3개)** : 기본형(기업관리, 상담, 진도관리 등 기본적 보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전문 프로그램 동시 운영

* "전문형" 주관기관은 일반형 주관기관 12개 중에서 3개를 지정

❷ (스케일업형) 2개 내외

* 매출액, 투자유치 실적, 기업가치 등 성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기관

- 후속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등 스케일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일반형"과 "스케일업형" 모두 신청 가능하나 1개 유형만 수행 가능하며, 2개 유형 다 선정 되었을 경우 "스케일업형" 우선 선정

□ **협약기간** : '27년 ~ '30년 (4년간, 2년+2년)

* '27~'28년(2년, 기본협약) 운영 후 중간평가하여, 협약 연장(1~2년) 여부 결정

** 협약기간 중 중대한 결격사유나 제재상황 등 발생 시, 즉시 협약중단 가능

□ 운영비 지원

○ 전담조직(팀)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며, 창업 프로그램비는 정부지원사업비의 **40% 이상 편성** 필요

< 주관기관 모집 유형별 기관 당 예산(안) >

구분	일반형		스케일업형	비고
	기본형	전문형		
예산(안)	4.1억원 이내	7.1억원 이내	11.3억원 이내	창업 프로그램비는 정부지원사업비의 40% 이상 편성

* "일반형-전문형"은 전문 프로그램 운영비 3억원 포함

** "일반형" 주관기관 **사업신청 시 7.1억원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선정평가를 통해 **"기본형" 주관기관 선정** 시 **4.1억원**으로 운영비 변경 예정

□ 신청요건

○ **(전담조직 인력구성)** 총괄책임자 및 전담조직의 장은 각 1명씩 필수 구성하며, 전담인력 및 겸직인력은 자율 구성

- **전담조직의 장** : 주관기관의 임명을 받은 자(또는 주관기관의 장)로서 창업(또는 창업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하고 사업 기획·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

< 주관기관 전담조직 인력구성 요건(안) >

구분	자격 기준	인원 수	요건
총괄책임자(대표자)	-	1인	필수
전담조직의 장	전담 또는 겸직으로 필수 구성	1인	필수
전담인력	본 사업에 100% 참여하는 인력을 의미하며, 도약기 창업기업 지원·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	-	자율
겸직인력	-	-	자율

* 전담인력 "확보 예정"으로 기재한 사항은 협약체결일 이후 60일 이내에 요건을 충족해야 함(증빙필수)

** 전담인력 증빙서류 : 인사명령 문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대응자금 및 투자재원)** 신청기관의 대응자금(자기부담사업비) 및 투자재원은 자율적으로 조성

※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재원(대응자금 및 투자재원)' 조성은 **'27년 계획한 규모**에 따라 사업기간(2년+2년) 동안 **동일하게 조성**되어야 하며, **미이행 시 제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주관기관 의무 및 역할

1 창업기업 발굴·지원

○ **(창업기업 발굴·선정)** 우수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모집, 창업기업 선정평가 운영 **(필수)**

* "일반형" : 다수의 일반 도약기업 선정을 위해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 등록된 전문가를 무작위 위촉하여 선정평가를 실시

** "스케일업형" : 기업가치 및 성장성이 높은 창업기업 선정을 위해 내·외부 기술 및 경영 전문가 구성 필요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 >

창업기업 모집	요건검토·서류평가	발표평가	선정·통보
중기부/주관·전문기관	주관·전문기관	주관·전문기관	주관·전문기관

* 평가 절차 및 세부 방식은 추후 별도 안내

○ **(사업화 지원·관리)** 창업기업의 사업추진·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승인·정산 및 창업기업 지원성과 조사 **(필수)**

2 창업기업 진도 및 성과관리

○ **(상담관리)** 창업기업의 사업화 목표(KPI) 및 마일스톤 관리 등을 위한 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필수)**

○ **(진도관리)**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기준 및 절차 등 지정 회계법인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비·사업운영 진도 관리 **(필수)**

○ **(성과관리)** 창업기업의 성과목표관리 등 원활한 창업활동을 지원하며, 사업종료 후 5년간 창업성과 추적 관리 **(필수)**

3 창업 프로그램 운영

< "일반형" 주관기관 >

○ **(기본 프로그램)** "일반형"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수 프로그램 1개 이상과 자율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2개 이상)**

- **(필수 프로그램)** '판로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 중 **1개 이상을 필수로 운영 (필수)**
- **(자율 프로그램)** 창업기업의 자금확보, 정보교류, 기술 고도화, 네트워킹 등 신청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자율)**

< 기본 프로그램 운영(안) >

구분		지원내용
필수 (1개 이상)	**판로지원**	• 판로개척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예시 : 대기업매칭 OI, 구매상담회, 유통입점 상담회 등
	투자유치 지원	• 투자역량 강화 및 투자유치 지원 * 예시 : 투자상담회, IR 컨설팅 등
자율 (예시)	**자금확보**	• 창업기업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예시 : 투자상담회 및 IR, 재무컨설팅 등
	정보교류	• 창업기업 경영 및 기술 역량 제고, 지원프로그램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예시 : 기업진단 및 경영컨설팅, 기술표준 포럼, 정책 세미나, 기타 창업기업 네트워크 행사 등

* 신청기관이 운영하고자 하는 창업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 KPI를 제시하고 성과 창출 전략을 수립·운영

○ **(전문 프로그램)** 판로, 자금, 자율(제안) 중 1개를 필수로 선택하여 제안 **(필수)**

- 선정평가를 통해 **"전문형" 주관기관에 선정**되었을 경우, **기본 프로그램**과 **전문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해야 함

- 전문 프로그램은 담당 창업기업 외 **전국 단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 계획 수립

* 운영 예시 : A신청기관이 "전문형" 주관기관으로 선정 되었을 경우, A기관에서 담당하는 창업기업(25개사 내외)을 포함, 창업도약패키지 전체 창업기업(30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

< 전문 프로그램 운영(안) >

구분	지원 내용
판로	• 대·중견기업 비즈니스 매칭, 오픈이노베이션, 공공기관 실증사업,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조달시장 진출지원(혁신제품, 우수제품 인증) 등
자금	• 투자상담회, IR 컨설팅, 국내외 투자자 네트워킹, IPO 컨설팅 등
자율(제안)	• 판로 및 자금 이외, 기관의 강점 프로그램을 자율 제안 * 예시 : 기술분야별 전문포럼, 제품디자인 고도화, 규제해소 법률지원 등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 프로그램 분야 조정 가능

< "스케일업형" 주관기관 >

○ **(고도화 프로그램)** "스케일업형" 주관기관을 신청하는 경우, 고도화 프로그램 중 "투자유치, 글로벌화" 필수 운영

- **(투자유치)** AC·VC 등 투자기관과 창업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 가능성 검토·매칭 프로그램 운영 **(필수)**

- **(글로벌화)** 북미·유럽·아시아 등 주요 해외시장 중심으로 해외 전시·IR, 현지 투자자 매칭 및 해외지사 설립 등 지원 **(필수)**

- **(자율프로그램)** 도약기 창업기업의 기술·사업 경쟁력 강화, 기업가치 고도화를 위한 지속성장 기반 프로그램 등 운영 **(자율)**

<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안) >

구분		지원내용
필수	투자유치	• 대규모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프로그램 지원
	글로벌화	• 글로벌 시장 진출, 자금 연계, 해외지사 설립 등 글로벌 확장 프로그램 지원 * 예시 : 북미·유럽·아시아 등
자율 (예시)	기업가치 향상	• 기업의 기술·사업·성장성을 높여 시장에서 가치를 높이고, 정부지원 이후에도 스스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수단 → 후속투자 유치, 우수인재 확보 등

□ 평가지표(안)

○ "일반형" 주관기관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서류평가	1. 기관 현황 및 인프라 (창업지원 인프라 및 네트워크 다양성 등)	20	발표평가	1. 비전 및 추진전략 (중장기 비전,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등)	20
	2. 추진체계 및 선정관리 계획 (비전·추진전략, 기업 발굴·육성 및 사후관리 등)	50		2. 사업 운영관리 (기업 선정·관리, 사업비 구성 및 집행 등)	30
	3. 프로그램 운영계획 (프로그램 차별성, 성과창출 가능성 등)	30		3. 프로그램 운영계획 (프로그램 구체성 및 성과 창출 가능성 등)	50
	합 계	**100**		**합 계**	**100**

* 상기 평가지표(안)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스케일업형" 주관기관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서류평가	1. 기관 현황 및 인프라 (투자·글로벌 인프라 및 네트워크 다양성 등)	20	발표평가	1. 비전 및 추진전략 (스케일업 비전,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등)	20
	2. 추진체계 및 선정관리 계획 (성장지원 전략, 유망기업 발굴·육성 및 사후관리 등)	50		2. 사업 운영관리 (유망기업 발굴·육성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 등)	30
	3. 프로그램 운영계획 (투자유치·글로벌화 프로그램 차별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 등)	30		3. 프로그램 운영계획 (투자.글로벌 인프라 및 네트워크 연계성 등)	50
	합 계	**100**		**합 계**	**100**

* 상기 평가지표(안)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 사업비 집행기준

< 주관기관 사업비 비목 >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제28조)

비목	비목 정의
	증빙서류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창업기업 등 지원을 위한 멘토링, 자문, 교육, 기술지원, IR, 협력기관 연계 프로그램, 규제애로 해소 지원, 지역협의회비 등
	내부결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프로그램 운영 사진, 서명록 등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인건비	지원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전담인력 인건비 및 겸직인력 수당
	• 최초 신청시 : 4대사회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매달 신청시(인건비) : 내부결재, 입금확인증(송금증), 급여대장 • 매달 신청시(수당) : 내부결재, 입금확인증(송금증), 업무내역서, 시간외 및 휴일근무 기록서, 품의서 등 • 협약 종료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대사회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수용비	창업기업등 모집·선정을 위한 평가비용, 수당 및 소모품비, 홍보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 평가비용 및 수당 : 내부결재, 위촉동의서, 서명록 등 증빙서류 • 소모품비 : 내부결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신용카드 영수증에 내역이 있을 시 생략),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등 • 홍보비 : 내부결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제작물 등 • 기타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등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여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참여인력 여비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회의비 (업무추진비) * (정부지원사업비 + 대응자금)의 2% 이하 구성	본 사업 관련 회의 및 간담회비
	내부결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회의록(30만원 이상 집행시), 서명록 등
기 타	• 비교견적서 : 2천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제출 필요

□ 유의사항

○ 대응자금(자기부담사업비)은 자율적으로 구성하나, **확보 계획이 있을 경우** 사업 **수행연도 6월까지 이행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 대응자금 증빙서류 : 대응자금 입금 내역서 등

○ 투자재원은 자율적으로 구성하나, **확보 계획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 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행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 투자재원 증빙서류 : '2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활용한다는 출자기관 발급 확약 공문, 확약서 등